##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 종류	直 草
파면	- 직원의 신분을 박탈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3개월 동안 연봉월액(강등 전 승진 가산급을 감액한 금액)의 30%를 감하여 지급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8개월 간 승진 제한
정직	- 대상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정직처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처분기간 동안 연봉월액의 30%를 감하여 지급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8개월 간 승진 제한
감봉	- 대상기간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1회에 연봉월액 1일분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 (단 처분기간 동안 감액총액이 연봉월액의 10%를 초과 할 수 없음)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간 승진 제한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간 승진 제한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및 채용 비위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4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제한기간에 6개월을 더한다.

# ■ 징계양정 기준(일반 비위행위 /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2)

# 일반 비위행위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의,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종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고 중과실인 경우	0 122 0 1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가. 성실·공정의무 위반				
1) 금품 및 향응수수(별표	(별표 <b>3</b> 의 1기준)	(별표 <b>3</b> 의 1기준)	(별표 <b>3</b> 의 1기준)	(별표 <b>3</b> 의 1기준)
3의 1)			(======================================	(2=== 1 : 12)
2) 공금의 횡령·유용	   파 면	 파면 ~ 정직	파면 ~ 감봉	정직 ~ 견책
3)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	_ · 면		정직 ~ 감봉	견 책
탁에 따른 직무수행	. –			
4) 직권 또는 직무를 이용	파 면	 정직 ~ 감 <del>봉</del>	 감봉 ~ 견책	 견 책
한 부당행위				
4의2) 「한국방송광고진흥	파 면	파 면	정 직	감 봉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4에 따른 부				
당한 행위				
5)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별표3의 2의 기준)	(별표3의 2의 기준)	(별표3 2의 기준)	(별표3의 2의 기준)
횡령 · 유용 범죄행위 신				
고의무 위반(별표3의 2)				
6) 직무 관련 기타 주요 범	파면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 책
죄행위 신고의무 위반				
7) 무단결근	파면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 책
8) 직무태만	파면 ~ 정직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9) 성 관련 비위 또는	파 면	파 면	정 직	감봉 ~ 견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				
14조의4 따른 부당한				
행름은폐거나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소극행정	파 면	파 면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파면 ~ 정직	정직 ~ 감봉	감 봉	견 책
의무 위반				
다. 보안의무 위반	파 면	파면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의,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종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고 중과실인 경우	
2.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性) 관련 위법행위 (별표3의 3)	(별표3의 3의 기준)	(별표3의 3의 기준)	(별표3의 3의 기준)	(별표3의 3의 기준)
나. 폭행 등 기타 법률위반 다. 음주운전(별표3의 4)	파면 ~ 정직 (별표3의 4의 기준)	정직 ~ 감봉 (별표3의 4의 기준)	감봉 ~ 견책 (별표3의 4의 기준)	견 책 (별표3의 4의 기준)
i dieclement				

■ 징계양정 기준(금품.향응수수 등, 성 관련 위법행위, 음주운전 /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3)

### 금품・향응수수 등과 성 관련 위법행위 및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 1. 금품・향응수수 행위자

금액 비위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수 동	견책 · 감봉 · 정직	정직ㆍ파면	파 면	
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 원에게 제공한 경우	능 동	감봉 · 정직		파 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 수 동 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		정직	ᆔ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 니한 경우	능 동	정직ㆍ파면	- 파 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 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	수 동	정직ㆍ파면	면 파면		
당한 처분을 한 경우	능 동	정직ㆍ파면		파 긴	

##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범죄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직상위자	기타 직원
행위자 보다 1단계 낮은 처분	행위자 보다 2단계 낮은 처분

※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기준보다 낮은 처분 가능

# 3. 성 관련 위법행위자

비위의 정도 및 과실어부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파면	파면	파면·정직	정직·감봉
그 밖의 성폭력·성희롱 파면		파면	정직	감봉·견책
성매매	파면	파면·정직	정직·감봉	견책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을, "성희롱"이란 「양성평등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4.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혈중알코 <del>올농</del> 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 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 <del>올농</del> 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강등 <sup>,</sup> 정직	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도로교통 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 주 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2회 음주운전 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운전업무 관련 직원" 이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3회 이상 <del>음주</del> :	운전을 한 경우	파면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 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의 유형이 경합될 때에는
<del>음주운</del> 전으로 원 음 <del>주운</del> 전을 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경우	파면 - 강등	보다 중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유 형에 따라 적용한다.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파면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 으킨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정직
	따른 조치를 하지		파면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	<u></u>	파면
음 <del>주운</del> 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	<u></u> 은 경우	파면- 정직

## ■ 징계양정 기준(채용비위 /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4)

## 채용비위 처리기준

### □ 채 용

구 분 유 형		련자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비고
응시·자격	경과실	고의·중과실	파면 <sup>~</sup> 정직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이란
요건 미확인	경고	감봉 <sup>~</sup> 견책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을
전형단계별	경과실	고의·중과실	ᆔᄱᅩᆛᅱ	말한다.
점수부여 부적정	경고	정직 <sup>~</sup> 견책	파면 <sup>~</sup> 정직	2. "채용절차"란 관계 법령,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감동	롱 <sup>~</sup> 견 책	파면~정직	<ul> <li>상위 지침, 공사 규정상</li> <li>채용기준 또는 절차를</li> <li>말한다.</li> <li>3. "주요절차"란 채용공고,</li> </ul>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서류·면접 시험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채용절차 미준수	감봉 <sup>~</sup> 견책	정직	파면 <sup>~</sup> 정직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 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한다.

구 분 유 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감봉 <sup>~</sup> 견책	파면 <sup>~</sup> 정직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감봉 <sup>~</sup> 견책	파면 <sup>~</sup> 정직
불가능한 경우 제외)		

<sup>※</sup> 규정 제49조에 따른 징계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3회 이상 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위 기준보다 높은 처분 가능

### □ 정규직 전환

구 분 유 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비고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파면^	<sup>~</sup> 정직	1. "부정채용"이란 재직자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감봉 <sup>~</sup> 견책	파면~정직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 청탁, 상관 지시 등을 말한다 2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은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감봉 <sup>~</sup> 견책	파면 <sup>~</sup> 정직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감봉 <sup>~</sup> 견책	파면 <sup>~</sup> 정직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을 포함한다.

※ "채용비위" 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sup>※</sup>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